

改正工業所有權法公布

— 80年 12月31日字, 7月 1日 施行豫定 —

- ◎……工业所有權 改正 4法(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法)이 지난 80年12月……◎
- ◎……23日 國家保衛立法會議會通過, 80年12月31日字 法律 第3,325 3,326 3,327……◎
- ◎…… 및 3,328號로 公布, 施行規則改正案이 確定되는 오는 7月 1日字로 施行……◎
- ◎……할 豫定이다. 政府는 工業所有權制度가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
- ◎……(91個國加入)을 中心으로 國際的統一化趨勢에 있는 現實에 步調를 맞추어……◎
- ◎……80年代高度產業國家로 發展하는데 必須不可缺한 課題로서 우리 나라 工業所……◎
- ◎……有權法을 파리協約同盟國의 共通規定事項에 符合토록 改正함으로써 파리協……◎
- ◎……約加入에 따른 態勢를 整備하였다. ………………◎

改正法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 特許法

現代의 商度多岐化한 發明의 内容을 詳細히記述하여 權利保護의 限界를 明確히 하고 先進國制度에 符合하도록 特許請求範圍記載에 있어 多項制를 採擇(第8條), 同盟國國民間의 優先權主張根據를 擴充(第40條, 42條), 重複研究와 2重投資의 防止를 위해 出願의 早期公開制度를 導入(第83條 2項)함으로써 審查處理促進을 위해 審查請求制度를 採擇(第80條 2項 및 3項)하였다.

◇ 實用新案法

特許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實用新案請求範圍記載에 있어 多項制를 採擇(第8條), 파리協約同盟國國民間의 優先權主張根據를 擴充(第29條, 特許法 準用), 出願의 早期公開制度를 導入(第29條, 特許法 準用), 出願의 審查請求制度를 採擇(第29條, 特許法 準用)하였다.

◇ 意匠法

意匠登録要件中 建造物이나 自然物을 模倣하

여 容易하게 創作할 수 있는 것을 不登錄事由로 追加(第5條), 同盟國間의 優先權認定 및 內國民待遇根據를 擴充(第16條 및 第17條(特許法準用)하였다.

◇ 商標法

파리協約規定과 先進國의 立法例를 參酌하여 새로운 團體標章制度 및 商標登録出願의 優先權主張制度를 導入(第2條 3項 및 第13條 2項), 需要者 保護를 위하여 不實商標의 不登錄事由를 補完(誤認을 일으키게 할 慮慮外에 欺瞞할 慮慮를 追加)(第9條), 國際的인 貿易去來의 增大에 따라 그 必要性이 增大되는 商標의 通商使用權設定範圍를 擴大하기 위하여 商品의 品質의 同一性 이외의 要件을 緩和(第29條), 正當한 商標權者의 保護를 위하여 그 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出願 및 商標權을 拒絕 또는 取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第16條, 第45條) 罰則中 罰金을 該當하는 自由刑에 맞추어 引上하는 외에 特許法改正에 따라 關係條文을 整備하였다.